

서울서부지방법원 2016. 2. 3 선고 2015가단29841 판결 [점유권침탈에대한 점유회수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6. 1. 20.

판결 선고 2016. 2. 3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.는 판결을 구함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별지 목록 기재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은 원고의 점유 하에 있었다. 그럼에도 피고가 무단으로 그 점유를 침탈하였기에 그 회복을 구한다.

2. 이 법원의 판단

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되어 점유를 시작한 2015. 초경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는지 살핀다. 을 제1,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, 원고는 2013. 말경부터 사업 악화로 이 사건 건물에서 벌이던 마트 사업을 중단하고, 관리비 등의 지급을 회피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떠나버렸고, 그 상태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자가 되었다. 결국 원고는 2013. 말 이후로 점유를 포기하여, 그 이후로는 점유자로서의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.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는 이미 원고의 점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, 점유침탈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판사이정형

별지